

#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손 술 · 전종덕  
임미애 · 이광희 · 정혜경  
김준형 · 황운하 · 이주희  
용혜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·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,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건설·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

률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(안 제4조).

나.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모 및 근로조건 등 노동환경을 고려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함(안 제27조).

다.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, 재위탁을 제한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(안 제42조 및 제47조).

##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, 도시철도차량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·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인은”을 “자는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의 위탁”을 “제1항의 위탁 및 제3항의 재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-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.

제4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&lt;신 설&gt;</p> <p>(생 략)</p>	<p>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<u>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, 도시철도차량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
<p>제27조(면허의 기준)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7조(면허의 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·인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
<p>제42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</p> <p>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</p>	<p>제42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</p> <p>① -----</p>

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 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 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<신 설>

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

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② -----  
-----  
---자는-----  
-----  
-.

③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위탁 및 제3항의 재위탁-----.

제47조(벌칙) ① -----  
-----

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